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40
----------	------

발의연월일 : 2025. 3. 25.

발 의 자 : 김선교 · 이현승 · 정동만  
김성원 · 김상훈 · 김예지  
윤상현 · 박덕흠 · 구자근  
김대식 · 최보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 실익 증진, 후계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상 기후 현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

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 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 라.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2. (생략)

② ~ ⑧ (생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  
-----.

1.·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  
-----  
-----.

-----2029년 12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